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기술거래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등 4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. ~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

제조(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)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출”을 “제출(전자적인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제4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.

제조(「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)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는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.

제조(「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」의 개정)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의3제3호를 삭제한다.

별표 1 제7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시설물 안전점검 기록대장은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

법」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.

제조(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)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장부는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6조(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) ① (생략)	제16조(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(이하 “기술거래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거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제출(전자적인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)</u> ----.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45조(규제의 재검토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45조(규제의 재검토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<u>1. 제16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</u> <u>의 지정기준 및 절차: 2014년</u> <u>1월 1일</u> 2. ~ 4. (생략) ② (생략)	<u><삭제></u>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	---

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의3(규제의 재검토) 성평등 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 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 야 한다.	제33조의3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수 련시설 안전기준: 2014년 1월 1일	<u><삭 제></u>
4. ~ 6. (생 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일부개정령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1조(장부의 비치 등) ①법 제63조에 따라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제조업자·판매업자, 총포·도검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임대업자, 화약류저장소설치자, 화약류사용자 또는 총포소지자가 비치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후단 신설>	제81조(장부의 비치 등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장부는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